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857호 2014년 5월 9일(금)

공 고

-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2
-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4
- 2014년도 속초시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..... 8

회 램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4년 5월 9일

속 초 시 장

가. 공 고 명 :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나. 도로위치 :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2040번지

다. 공고기간 : 2014. 5. 9. ~ 5. 29. (20일간)

라. 도로지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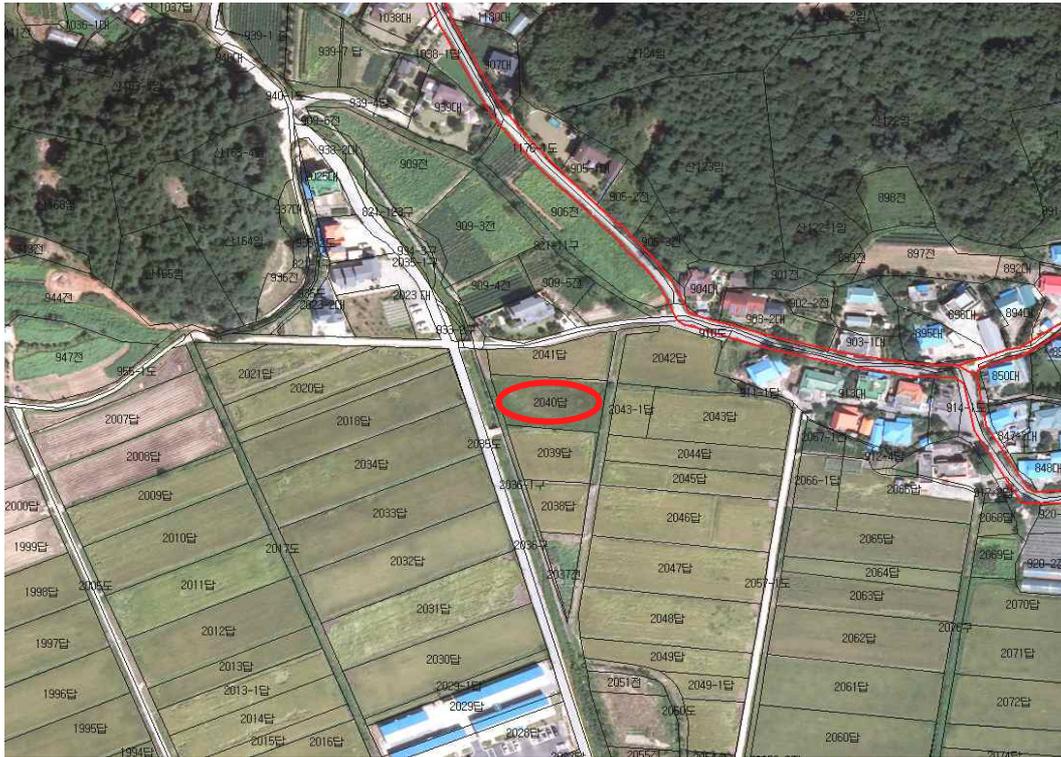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건축허가번호 (건축허가일)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강원도 속초시 도문동	2040	답	1,186	88	강신순 김종호	2014-신축허가 -제18호 (2014. 04. 29.)	건축주 :강신순 김종호

마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
바. 관계도서 :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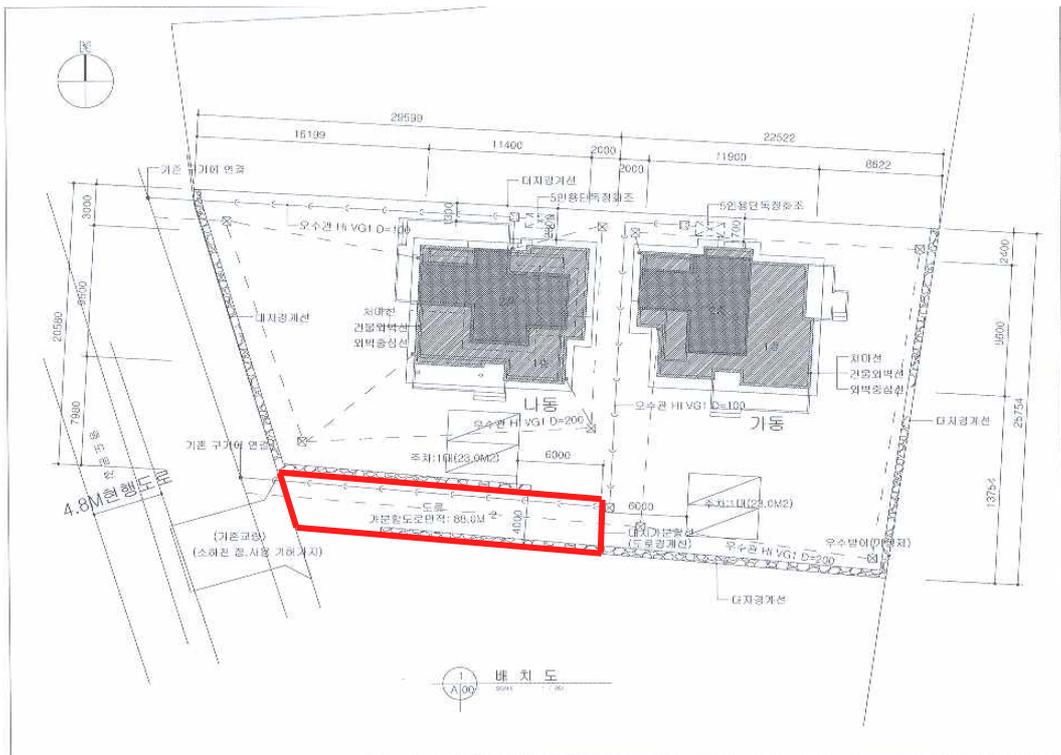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•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 치 도

축 척 NONE



현 황 도

축 척 NONE

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5 월 9 일

속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함재식

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차별을 담고 있는 자치법규에 시정 요청이 있어,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조의 호를 삭제하고, 또한 규모와 활동사항은 많은 방재단 간부조직중 부단장 인원 증가 요인이 발생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단장 인원 변경 당초 1명에서 2명 변경
(안 제4조제1항 변경)
- 나.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(안 제6조제3호 삭제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29일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 【참조 :재난안전총괄과장(담당자 : 김록문), 전화 : 639-2265, 팩스 : 639-2588】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

붙 임 : 1. 속초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1부.

2. 신규대비표 1부. 끝.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

제4조제1항중 “부단장1인”를 “부단장2인”로 한다

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조직)①방재단은 단장1인, 부단장1, 간사1인 및 단원 으로 구성된다</p> <p>②~⑨(생략)</p> <p>제6조(해임)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 임 할 수다</p> <p>1.~2.(생략)</p> <p>3 <u>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</u> <u>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</u> <u>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	<p>제4조(조직)①---부단장2인----- ----- -----</p> <p>3. (삭제)</p>

2014년도 속초시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

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2014년도 속초시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5월 9일

속 초 시 장

1. 지원대상 :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택 중 속초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받은 경관주택
 - 가.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용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
 - 나.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
 - 다. 건축법에 따라 건축되는 200㎡ 미만의 단독주택
2. 지원내용
 - 가. 지원 동수 : 2동
 - 나. 지원 금액 : 동당 5백만원 범위내 보조
3. 지원신청
 - 가. 신청대상 : 2013. 12월~2014. 11월 기간 중 완공된 주택
 - 나. 신청시기 : 공고일부터 2014. 11월 말일 까지
 - 다. 신청기관 :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
 - 라. 제출서류 :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 (건축설계도, 건축현황사진 첨부)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팀(☎033-639-225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